건양대학교 발전기금 규정(3-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대학발전에 기여가 될 발전기금을 조성함은 물론 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발전기금에 관하여 적용하며, 학사내규에 의하여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발전기금이라 함은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기타자산(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 등을 기부하여 본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되는 기부금을 말한다.(개정 2011.4.20)

② 출연자에 대한 예우는 발전기금 출연자에 대한 본교의 기본적인 배려를 말한다.

제4조(예우내용) 발전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증서 및 감사서신 : 본교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2. 감사장 : 모든 후원자에게 발송(개정 2011.4.20)
3. 감사패 : 일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및 부동산 등을 출연한 자(개정 2011.4.20)
4. 특별예우
   가. 기여정도에 따라 건물명칭 또는 건물내 특정한 장소에 아호(雅號) 및 지정된 명칭 등을 부여하여 영구 보존한다.
   나. 그 외 본 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별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 특별예우에 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거친다.
   라. 발전기금에 참여한 자의 정성과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양의 역사에 기록을 남겨 영구 보존한다.

제5조(발전기금 용도의 지정) 발전기금 출연자의 뜻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 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발전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1. 장학기금
2. 교육시설 기금
3. 학술연구 기금
4. 특정사업 기금
5. 도서기금
6. 학생 문화 기금(개정 2011.4.20)
7. 학과지정(개정 2011.4.20)
8. 학교에 일임(개정 2011.4.20)

제6조(발전기금의 유형) 발전기금은 현금기부, 비현금 기부 및 유산기증으로 그 유형을 구분한다.

1. 현금기부 : 기금 약정금액을 일시불과 분할(기부자 지정)로 구분
2. 비 현금 기부(현금을 제외한 기타 현금등가물 포함)

가. 유가증권 및 부동산 기부
나. 유형고정자산 기증 : 도서자료, 고서화, 자재 및 예술품 등
다. 권리 및 보험기부 등

3. 유산기증 : 기부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현금, 비 현금을 구분하지 않음), 단 법적절차와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한다.

제7조(위원회) 본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학발전기금모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 2인과 간사1인을 둔다.(개정 2011.4.20)

② 당연직 위원은 대외협력부총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외부위원과 감사는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4.20., 2018.07.1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외부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4.20)

④ 발전기금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또는 감사)을 두며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4.20)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조성·증식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용기자재, 시설, 도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8조제2항 중 “부총장, 기획조정처장”을 각각 “대외협력부총장, 기획처장”으로 하고, “홍보처장”을 삭제(보직 없음) 한다.